

개정 신용정보법 간담회

2020년 2월 20일(목)



금융위원회

금일 발표될 하위법령 개정 등의 내용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향후 법령 개정 절차상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사항에 대해 부분적으로 **정식 입법예고 절차 전에 공개**하는 것으로

해당 내용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내부 논의, 의견수렴 결과 반영, 기타
법령 개정 작업 과정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수정**될 수 있습니다.

기타 금일 발표에서 공개되지 않은 하위법령 개정 안 등은

3월 중 있을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공개될 것이며,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에 공식적인 의견제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경과

개정안 발의

- (‘18.11.15.)
- 김병욱 의원 개정안 발의
- * 추경호 의원 발의 (‘16.6월), 박선숙 의원 발의(‘16.12월), 송희경 의원 발의 (‘17.7월)

국회 정무위

- (‘19.11.28.)
- 법안1소위 통과
- (‘19.11.29.)
- 전체회의 통과

국회 법사위

- (‘20.1.9.)
- 전체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

- (‘20.1.9.)
- 본회의 통과

법 공포

- (‘20.2.4.)
- 법 공포
- 공포 6개월 후 시행

2. 신용정보법 개정안 주요내용 - '가명정보' 개념 도입

신용정보법		개념	활용가능 범위
	개인정보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	사전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받은 범위 내 활용 가능
	가명정보	추가정보의 사용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	다음 목적에 동의 없이 활용가능(EU GDPR 반영) ①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②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③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등
	익명정보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복원 불가능할 정도로) 조치한 정보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활용
	○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개정 (4월 ~)		

안전한 데이터 결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p>신용정보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서만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하는 정보집합물을 제3자가 보유하는 다른 정보집합물과 결합 가능-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된 정보집합물을 해당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전달하는 경우 가명조치 또는 익명조치가 된 상태로 전달
<p>하위규정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전문기관 자격요건<ol style="list-style-type: none">(1) 민법상 비영리 법인(2)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본금, 매출액 등 요건을 갖춘 법인○ 데이터전문기관의 위험관리체계<ol style="list-style-type: none">(1) 데이터전문기관 업무와 그 외 업무 수행직원간 분리(2) 데이터전문기관 업무 수행서버와 그 외 서버의 분리

안전한 데이터 결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하위규정 고려사항

○ 데이터결합의 절차

- (1) 금융위가 정한 양식에 따라 결합신청
- (2) 결합의뢰기관은 데이터에 포함된 식별값을 결합키로 대체 (의뢰기관 상호 협의 하 결정)
- (3)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경우 결합대상 데이터 가명 또는 익명처리
- (4) 암호화 등 보호조치를 하여 전달
- (5) 데이터전문기관은 데이터 결합 후 결합키를 삭제 또는 대체키로 전환
- (6) 결합데이터의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
- (7) 결합데이터를 결합의뢰기관에 전달 후 결합데이터 및 원본데이터 즉각 삭제
- (8)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 관련 사항 기록 및 관리, 금융위 보고

빅데이터 분석·이용 부작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신용정보법

- 신용정보회사 등에 추가정보 분리보관 및 엄격한 보안대책 마련·시행 의무화
 - 가명조치에 사용한 추가정보는 일정한 방법으로 분리하여 보관
 - 가명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
-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경우 가명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삭제토록 하는 등의 의무 부과

빅데이터 활용 부작용 방지를 위한 책임성 확보장치 마련

신용정보법

-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한 경우
 - 매출액 3% 이하의 과징금 부과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집행 기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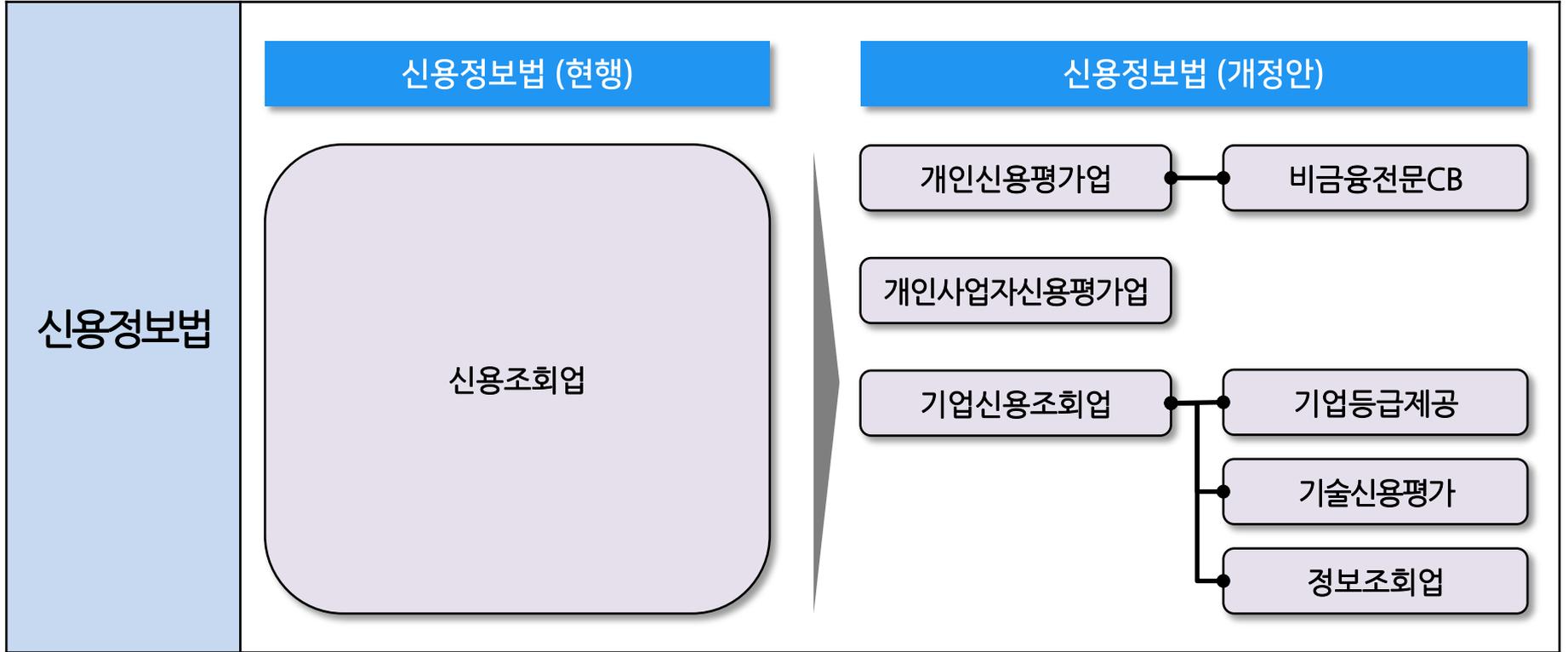
신용정보법

○ 상거래 기업 및 법인(금융회사 등은 제외)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법집행(조사·제재) 기능 부여

- 자료제출요구·검사권·출입권·질문권 및 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 부여

※ 「개보법」 개정안 : ❶ '개보위'를 행정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로 격상 ❷ 온라인(정보통신망법 : 방통위), 오프라인(개인정보법 : 행안부)로 나뉜 개인정보 관련 법집행기능을 개보위로 이관·통합

신용조회업무 정의 세분화



신용조회업 진입규제 요건 완화

신용정보법	신용정보법 (현행)			신용정보법 (개정안)		
	인가단위	최소자본금	금융회사출자요건	인가단위	최소자본금	금융회사출자요건
	개인CB	50억원	적용(50%이상)	개인CB	50억원	적용(50%이상)
				① 비금융전문CB	5억원/20억원*	배제
				② 개인사업자CB	50억원	적용(50%이상)
	기업CB			기업등급제공	20억원	적용(50%이상)
				기술신용평가	20억원	적용(50%이상)
				정보조회업	5억원	배제
하위규정 고려사항	<p>○ 인적요건 : (개인CB업, 개인사업자CB업, 기업CB업) 3년 이상 신용평가업무 종사자 등 10인 이상 (전문개인CB업) 3년 이상 신용평가, 분석 업무 종사자 2~5인 이상 (기업정보조회업) 3년 이상 신용평가업무 종사자 등 2인 이상 (기업정보조회업 + 전문개인CB업) 3년 이상 신용평가, 분석업무 종사자 5인 이상</p>					

* (5억원) 비정형 데이터, (20억원) 대량의 정형 데이터

개인사업자에 특화된 신용평가체계 구축

신용정보법

-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도입
 -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를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
 - 개인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외에 신용카드업자도 겸영업무로 수행 가능

신용조회회사의 영리목적 겸업 금지 규제 폐지

신용정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겸업을 허용○ 데이터 분석·가공, 컨설팅 등 겸업·부수 업무 수행 가능<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실채권 매입, 타인의 권리실현을 위한 소송대리업무는 법 개정 이후에도 금지되는 행위
하위규정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통)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전자문서중계업무 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금융상품 광고, 홍보, 컨설팅, 교육, 연구, 상담, 본인인증, 업무용 부동산 임대차 등○ (비금융CB) 비금융사업자의 진입을 위해 비금융업무에 대해서는 제한없는 겸업 허용○ (개인사업자CB) 신용카드업 및 그 부대업무, 개인사업자 사업체 및 사업장 현황조사, 유동자산에 대한 가치평가,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에 활용된 정보 또는 이를 가공한 정보의 제3자 제공 업무 등○ (기업CB) 기업의 사업체 및 사업장 현황조사 및 유동자산에 대한 가치평가,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 관련 조사, 분석, 연구, 컨설팅, 자문, 기업신용평가에 활용된 정보 또는 이를 가공한 정보의 제3자 제공 업무 등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건전성·책임성 제고

<p>신용정보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정보회사 등에 적용되는 지배주주 변경 승인 제도와 임원 자격 요건 등에 대해 현행 「지배구조법」에 준하는 제도 도입○ 일정한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에 대해 현행 「지배구조법」에 따른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에 관한 제도 도입
<p>하위규정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대주주 요건은 기본적으로 동일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신설

<p>신용정보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에 대해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해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조치-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일정한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상태를 평가할 때 정확성·공정성·투명성 등의 원칙에 따라 업무 수행- 성별·출신지역·국적 등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 금지 등
<p>하위규정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열회사 상품 및 서비스 구매, 이용을 조건으로 신용평점 등을 유리하게 산정하는 행위○ 기업CB간 계열회사 신용평가를 위해 상호 교차하여 신용평가를 하는 행위○ 정보의 제공에 있어 합리적 이유없이 의뢰인을 차별하는 행위○ 신용평가의 요청인 등에게서 통상이익의 범위를 벗어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하는 행위○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 신용평가계약의 체결 또는 특정 신용평가 결과가 부여될 가능성 또는 예상 등급을 미리 제공○ 신용평가계약의 체결을 유인하기 위해 신용등급을 이용하는 행위 등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의 도입

※ 공공분야 MyData 서비스와 연계

신용정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의 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본인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허가제로 도입○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전송 받을 수 있도록 정보보호·보안 강화<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금융회사 등이 선정하여 사용·관리하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보관·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금지○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대리 행사, 일정한 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 등을 부수·겸영업무로 허용
하위규정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신구간 암호화시스템, 백업 및 복구시스템, 시스템 보안 및 시설 보안을 포함한 보안관리 체계, 보유정보의 적절한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 성능을 갖출 것, 백업 및 복구작업이 최소한에 가능할 것○ 방화벽 및 데이터 암호화 처리체계를 갖출 것, 침입 탐지 등 보안시스템 구축, 내외부 네트워크 분리 운영, 외부침입 방지 등○ 출입자관리 통제 및 데이터 반출입 통제에 대한 대책, 백업 및 소산관리 대책을 강구할 것 등

하위규정 고려사항

○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업무

(1) 비금융업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한없는 겸업 허용

- 다만, 마이데이터 사업과 겸업을 허용하기에 적절치 않은 비금융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단계에서 허가정책상 제한

(2) 전자금융업, 대출중개 및 주선,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자문, 일임

(3)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 업무 등

○ 마이데이터 사업자 금지행위

(1) 자신에 대해서만 전송요구권 행사를 강요하는 행위

(2) 전송요구권의 변경 또는 철회를 어렵게 하는 행위

(3) 이해상충행위 방지 시스템 미마련

(4) 정보주체 개인 요구시 보유 데이터 즉각 삭제 등

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도입

<p>신용정보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본인의 채권자변동정보 열람·교부 요구 가능-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금융회사 간의 정보공유 지원 기능 외에 채무자를 보호하는 공적 역할 수행
<p>하위규정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권자변동정보 등록대상자: 금융회사, 대부업자, 공제, 보증기관 등○ 등록대상 거래: 신용공여,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 대부계약, 보증기관 대위변제채권 등○ 등록대상 정보: 최초 대출일, 채권 양수도 내역, 채권원금, 채권소멸시효, 가압류 등 집행일 등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설치

신용정보법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설치
 -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의 평가에 사용되는 기초정보, 평가모형의 예측력, 안정성 등 심의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평가 등의 정확성·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

정보활용 동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동의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신용정보법

- 정보활용 동의제도의 개선(단순화·시각화)
 - 쉬운 용어나 단순하고 시청각적인 전달 수단 등을 활용
 - 정보활용 동의를 받을 시 고지사항의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정보**를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 신용정보주체가 요청할 경우 고지사항 **전부**를 알려야 함

정보활용 동의등급 부여

신용정보법

- 금융회사 등의 정보활용 동의사항에 대하여 사생활 침해위험, 소비자혜택 등을 평가하여 정보활용 동의등급 부여
- 금융회사 등은 그 동의등급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활용 동의를 받아야 함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도입

신용정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금융회사, 정부·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다른 금융회사 등에 제공토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도입		
하위규정 고려사항	<table border="0"><tr><td data-bbox="328 514 1120 1007"><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정보전송요구권 행사대상<ol style="list-style-type: none">(1) 금융회사 등(2) 예보,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3) 전기통신사업자,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4) 각종 공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td><td data-bbox="1120 514 1879 1007"><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정보전송요구권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는 자<ol style="list-style-type: none">(1) 금융회사 등(2) 마이데이터 사업자(3) 개인신용평가회사</td></tr></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정보전송요구권 행사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금융회사 등(2) 예보,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3) 전기통신사업자,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4) 각종 공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정보전송요구권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금융회사 등(2) 마이데이터 사업자(3) 개인신용평가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정보전송요구권 행사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금융회사 등(2) 예보,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3) 전기통신사업자,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4) 각종 공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정보전송요구권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금융회사 등(2) 마이데이터 사업자(3)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도입

하위규정 고려사항

- 전송대상 정보
 - (1) MyData Working Group 논의를 통해 결정된 금융거래정보
 - (2) 국세 및 지방세 납부정보
 - (3) 4대 보험, 공적연금에 대한 보험료 납부정보
 - (4)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료 납부정보 등 거래내역 정보
 - (5)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신용정보이동권 행사 금지
 - (1) 정보주체 본인의 동의가 이동권 행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2) 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 방식 미준수
 - (3) 인증정보 탈취 등 부당한 방법에 의한 전송요구임을 알게된 경우
- 신용정보 전송 등의 절차
 - (1) 최근 5년 내 정보는 컴퓨터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전달
 - (2)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전송요구권 행사내역을 연 1회 이상 통지

자동화평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권 보장

<p>신용정보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화평가에 대한 적극적 대응권 도입<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금융회사 등에게 자동화 실시 여부 및 자동화평가의 결과 및 주요기준, 기초자료 등의 설명 요구 가능-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또는 기초정보의 정정·삭제, 자동화평가 결과의 재산출 요구 가능
<p>하위규정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대상 기관: 금융회사 및 신용조회회사○ 적용대상 거래: 개인신용평가, 여신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 금융거래 신청에 대한 승낙 여부 결정○ 불인정사례: (1) 정정 요청 내용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대응권 행사

개인신용정보 활용·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제도 도입

신용정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회사 등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점검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금융위원회는 이를 점수 또는 등급으로 표시하여 금융감독원 검사시 활용 가능		
하위규정 고려사항	<table border="0"><tr><td data-bbox="357 726 1130 933"><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대상 기관<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정보관리 보호인 선임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 대부업자는 총 자산 100억원 초과 대상자로 한정</td><td data-bbox="1159 726 1864 933"><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대상 항목<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정보법 준수와 관련된 72개 항목* 금감원 시행세칙 규정 예정</td></tr></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대상 기관<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정보관리 보호인 선임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 대부업자는 총 자산 100억원 초과 대상자로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대상 항목<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정보법 준수와 관련된 72개 항목* 금감원 시행세칙 규정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대상 기관<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정보관리 보호인 선임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 대부업자는 총 자산 100억원 초과 대상자로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대상 항목<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정보법 준수와 관련된 72개 항목* 금감원 시행세칙 규정 예정		

신용정보회사등의 손해배상 책임 강화

신용정보법

- 신용정보회사등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금 강화
 - 손해액의 3배 → 5배

3. 향후 추진계획

현재 범정부 데이터 경제 T/F (기재부 1차관 주재) 를 통해
데이터 경제 3법 하위법령 등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

데이터 경제 T/F 논의 결과 및 금일 수렴된 의견 등을 종합하여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

감사합니다!